

2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2017년 10월 26일
- 제안자: 박상태, 이귀화, 조재구, 정 용, 이경애, 임인환 의원
- 회부일자: 2017년 11월 01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7년 11월 28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상태 의원)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게도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참고자료

- 가. 신규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전배운)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5년에 비해 본 조례에서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안 제3조제2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5년 이내로 변경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불편 및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영차고지 사용자들이 공영차고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 이전 등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이를 미리 예측하여 사용허가 해야 할 것임.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5년 이내로----- ----- ③ (현행과 같음)		

붙임2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⑤ 생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